

「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6월 9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6월 18일

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첨단산업국장 남 병 국

나. 제안이유

- 1)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 증대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어,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 관련 중소기업을 전문기업으로 발굴·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
- 2)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전문적,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1) 사 무 명 :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
- 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
가) 추진근거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, 제9조(관련사업 추진), 제10조(경비보조)

나) 필요성 :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현황조사, 기술·사업성 분석,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사무로, 수소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3) 위탁 사무 내용 :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전반

- 가) 구미시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
- 나) 수소기업 기술사업화·판로개척·컨설팅 등 기업지원사업 운영
- 다) 지원기업 사업 수행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
- 라)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

4)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5) 위탁기간 : 2026. 7. ~ 12.

6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70백만원(도 81, 시189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비고
270	27	234	9	

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

※ 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국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6.02.12.)

8) 위탁구분 : 재계약 (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)

9) 부서의견

가) 본 사업은 지역 수소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 체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.

나) 수소산업 기업지원 전문성과 수행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수소기업 육성 및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,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, 제9조(관련사업 추진), 제10조(경비보조)
- 2) 예산조치: 2026년도 예산편성
- 3)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: 적정(2026년 구미시 첨단산업육성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)
- 4)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동의안은

-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관내 유망 수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·지원하고자, 관련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발굴·선정부터 기술사업화 지원,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,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관련 부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·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 산업 관련 분야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